

## 1. 개정이유

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주류등 측정·단속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사용 중인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활용에 관한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의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측정장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(비접촉식 음주감지기 포함)하고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사용에 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
- 나. 단속 장소에 공항 외 비행장, 이착륙장 등을 포함하여 규정
- 다.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주기 준수를 위해 음주 측정장비의 교정 주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수정하고 제작사 등에서 정한 주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
- 라. 단속공무원의 최초 업무 수행 전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,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자를 교관으로 지정하도록 개정
- 마. 혈액 등 채취동의 및 확인 시 의료인의 서명란 추가 등 서식 변경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『항공안전법』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지방항공청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하였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##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·단속 업무 지침 일부개정안

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·단속 업무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측정장비”란 음주측정기, 비접촉식 음주감지기, 약물측정기를 말한다.  
제3조제2항 중 “음주측정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, 음주측정기 사용방법 및 음주 측정절차”를 “음주측정기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의 정상 작동여부와 사용방법을 확인하고, 측정·단속절차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공항”을 “공항, 비행장, 이착륙장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「감염병예방법」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단속 공무원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른 측정 결과 종사자가 음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, 제4항에 따라 재측정해야 하며 감지모드 설정 후 측정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.

제12조제2항 본문 중 “6개월마다”를 “4개월마다”로, “도로교통공단 등 국가

공인기관”을 “국가공인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2항에 따라 측정장비의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정한 기관에서 보정을 실시할 경우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정한 기관에서 정한 주기를 적용할 수 있다.

제1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최초로 수행하기 이전에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기관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1년 이상의 측정·단속 경험을 갖춘 자를 교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제16조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”을 “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1월 1일”로, “6월 30일”을 “12월 31일”로 한다.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“측정장비”란 음주측정기, 비접촉식 음주감지기, 약물측정기를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음주 측정 사전준비) ① (생략)</p> <p>② 기관장은 음주 측정 전에 단속 공무원이 <u>음주측정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, 음주측정기 사용방법 및 음주 측정절차와 음주종사자에 대한 조치절차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음주 측정 사전준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음주측정기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의 정상 작동여부와 사용방법을 확인하고, 측정·단속절차</u>----- -----.</p>
<p>제4조(음주 측정·단속) ① 단속 공무원은 종사자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음주 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.</p> <p>1. 운항·객실승무원(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) : 항공기 운항을 위한 비행임무 시작시간(show-up)부터 비행임무 종료 후 해당 <u>공항</u>을 벗어나기 전까지 브리핑실, 이동경로(보안검색대, 탑승게이트 등) 또는 기내에서 측정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4조(음주 측정·단속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항, 비행장, 이착륙장 등</u>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② ~ ⑤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12조(측정장비 관리) ① (생략)

② 기관장은 음주·약물측정 결과의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음주 측정장비는 6개월마다, 약물 측정장비는 12개월마다 도로교통공단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교정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가공인기관에서 보정이 어려운 장비의 경우 장비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정한 기관에서 보정을 실시한 후 국가공인기관에서 교정을 받을 수 있다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『감염병 예방법』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단속 공무원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른 측정 결과 종사자가 음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, 제4항에 따라 재측정해야 하며 감지모드 설정 후 측정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.

제12조(측정장비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4개월마다 -----  
----- 국가공인기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

## 혈액 등 채취동의 및 확인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대상자 (종사자)	소속	직업(직무)
	성명	주소
	생년월일	연락처
음주 또는 약물사용 측정	구분 [ ] 음주 [ ] 약물사용	
	일시	장소
	방법 [ ] 음주측정기 [ ] 소변검사 [ ] 타액검사 [ ] 기타( )	
채취 유형	구분 [ ] 혈액 [ ] 소변 [ ] 모발 [ ] 기타( )	
	일시	장소
	방법	
채취자 (의료인)	소속	직업
	성명 (서명 또는 인)	연락처
입회 공무원	소속	직위
	성명 (서명 또는 인)	연락처
기타 관계자	소속	관계
	성명	기타
참고사항 (측정 시 정황 등 기재)		

상기 본인은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·검사를 위하여 [ ] 혈액, [ ] 소변, [ ] 모발, [ ] 기타( ) 채취에 동의하고 임의로 제공한 채취물은 전량 감정에 소비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위 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위 동의 및 확인자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